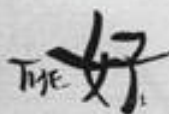


건강한 대학 문화를 위한 성인지 교육

연세대학교 제25대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제 25대 총여학생회



01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



【 캠퍼스 내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들의 이슈화 】

【 성폭력의 대부분은
술자리에서 발생한다 】



02 성희롱, 성폭력 개념 알기

성폭력 성희롱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노동권이나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용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성차별에서 권리보호의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됨

성적 자기 결정권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할 책임,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①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여성의 40%가 성희롱 경험

성폭력은 일상의 권력 관계를 성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수-제자, 선배-후배, 사장-직원...

성희롱 성폭력은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03 성희롱의 판단기준



I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피해자 중심주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를 때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한다는 의미.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이나 압박에 대한 논의 위주가 아닌 피해자의 경험과 관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려는 것

II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평소에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성희롱 사실 자체가 축소되거나 은폐될 수 없다.

III 성폭력 피해 경험은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성폭력인 일이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 과거의 일이 시간이 지난 후에 성폭력으로 다시 생각되기도 하며 같은 말도 나와 상대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 성폭력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IV 성희롱,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언어적, 환경적, 신체적, 시각적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 ✓ 동아리 뒷풀이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술을 강요, 거부시 동아리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함
- ✓ MT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숙하다가, 서로 의식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를 더듬고 키스하거나 껴안음
- ✓ 뒷풀이에서 평소보다 과도한 신체적 스킨십 나중엔 문제를 제기하면 친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함
- ✓ 분위기를 띄우게 하기 위한 명목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리에서 이끌어 내어 춤을 추게 함



“ 이게 무슨 성폭력이야?
그냥 농담한 거야 ”

- ✓ “여자는 외모다. 명품 진품 반품으로 나누는 거다.”
- ✓ “애인이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 ✓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각종 음담패설

“사귀는 사이에서 무슨 성폭력이야? 내 애인인데 그러면 안돼?”

- ✓ 사귀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지나치게 통제 및 감시
- ✓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
- ✓ 호감을 가진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락

-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
- 브래지어 끈 자리를 옷 위로 쓰다듬는 행위
- 키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 상대의 신체 부위를 주시하는 행위

**“여자애가 평소에 몸가짐을 조신하게 했어야지.
네 탓도 크다”**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나무라는 경우

“내가 개를 아는데 원래 그러는 애가 아니다”

가해자의 친분을 근거로 가해자의 행위를 옹호하는 경우

“없던 일로 하자. 밝혀지면 네 인생만 망치는 거다”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너 그거 알아? XX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폐하는 경우

05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 상대방이 만취 상태라고 하여 함부로 신체 접촉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성적 농담은 자제한다
 - 성적자기결정권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한다
 - 자신의 주량을 미리 파악하고 과도한 음주는 자제한다
 - 주위에서 일상적인 성폭력적 언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 술을 강요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존중
 - 술자리 게임에서 특정 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게임은 자제
 -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이들이
-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 언어성폭력 발생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공동체 문화 만들기

06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안정을 취하기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 성폭력 상담실의 상담을 받으며 심신의 안정 취하기
성폭력은 심한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히므로 치유 과정이 가장 중요함

성폭력으로 인정하기

사건의 정황 파악한 후, 당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
피해자인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사건 해결 진행

다양한 사건 해결방법의 장단점 검토 후 대처 방향 정하기
학교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 하에서 학칙에 의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사건을 덮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할 것
- ✓ 피해자가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지지해 줄 것
- ✓ 사건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지 않을 것
- ✓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지 않을 것



07 성희롱, 성폭력 상담문의

성희롱 성폭력 상담실 위치: 논지당
상담가능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상담예약방법: 02-2123-2118, helper@yonsei.ac.kr

총여학생회 학생회관 324호,
02-2123-3645
theho@yonsei.ac.kr

감사합니다.